

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4. .

제 출 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이유

기존 공무원여비 정산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공무원 여비를 정액제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·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나.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(안 제2조)

-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 일괄지급
 -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 : 월액여비 전액/15로 산정지급
 - 출장일수 15일 이상 : 전액지급

다. 여비지급 구분(안 제3조)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(여비지급 구분표)에 의거
 - 시장은 제1호 다목 또는 라목 적용
 - 그 외 공무원은 계급별 각호를 적용

라. 운임 및 숙박비 지급(안 제4조)

- 운 임 : 철도·선박 ⇒ 등급, 항공기·버스 ⇒ 정액지급
- 숙박비 : 제1호 ⇒ 46,000원, 제2호 ⇒ 30,000원 지급

마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(안 제5조)

- 1)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함.
- 2)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⇒ 세출예산집행기준 시달로 여비사후 정산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증빙자료 징구토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공무원여비규정」, 세출예산집행 기준(행안부 예규 제129호)

나. 입법예고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

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시장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

1.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영 제17조, 제22조, 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”은 “「속초시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」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영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 동 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공무원
여비규정」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
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
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
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
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
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
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